ASSET MANAGEMENT 브이자산운용

원금 손실가능 상품

브이 스텔라 일반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신탁계약서

협회펀드코드 : DS612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브이자산운용㈜와 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변경(2025.03.28)**
②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업자는 독립적으로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행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폐쇄형"이라 함은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단위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사모형"이라 함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브이 스텔라 일반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1 호"**이라 한다. **규약변경(2025.03.28)**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단위형
4. 폐쇄형

5. 사모형
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서 제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부실자산 상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등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 3 조의 2(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등) ①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2.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3조의3(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적격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 등의 일치여부 확인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 및 핵심상품설명서에서 정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인 2022년 3월 16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인 2023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2.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신탁에서 보유 중인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전부가 현금화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이 투자신탁재산 전부가 현금화된 날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까지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3.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계약기간이 경과하도록 투자신탁에서 보유중인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 상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또는 매각 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26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 조좌로 한다.

제7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설정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기존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3.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11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

FORWARD thinking

는 법 제 249 조의 2 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증권 양도시 양수인은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합병승인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3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 14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5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229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법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 및 법 시행령 제2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한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이하 "채권"이라 한다)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양도성예금증서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주요투자대상자산 등) ①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이라 함은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다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 관련 다음 각호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매입비(토지매입과 관련된 차입금 대환을 포함한다)
2. 제세공과비 및 개발사업관련 각종 분담금
3. 사업간접비
4. 공사비
5. 사업권인수비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6. 기타 사업관련 경비

② 제1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취득 또는 매각. 이 경우에는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실사 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관리·개량·개발 및 임대.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관련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투자증권 및 주식을 말한다.

1.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투자증권
2.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으로서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자산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 또는 부동산담보부채권]을 기초로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 가액의 7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
2.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로서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되거나, 그 신탁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것
3.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시행사가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공사의 자금보충 약정 또는 시행사가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경우 시공사로부터 동 투자신탁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부동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제 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래 각 목의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투자신탁이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1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1년

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이 투자신탁이 합병·해지되는 경우

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제15조의2제1항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5.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다.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라.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②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증권 또는 금전을 차입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6 조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5 호 및 제 6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투자대상자산의 부도 등에 따른 가격변동 또는 기타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해소되는 시기까지
5.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19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제 20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및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신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1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1조의2(수익증권의 판매제한 등)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100인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를 말한다.

1.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 ·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수를 산출함에 있어 다른 집합투자기구(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제1항에 따른 수익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③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한다.

제 22 조(판매가격) 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FORWARD thinking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에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3 조(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 24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해당사항 없음

제 6 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5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6 조(기준가격 산정 및 제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제 27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 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영업일
2. 최초 회계기간 경과 후부터 매 3 개월간

제 28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49조의8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9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성과(이하 "이익분배금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한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1. 지급기준일: 신탁회계기간 종료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의 익영업일
3. 분배금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 또는 현금으로 분배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이익분배금 분배시 다음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제 30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1 조(상환금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의 2(중도상환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제 15 조 규정에 따라 투자하여 운용한 투자신탁재산이 회수(이자수령 등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이하 "중도상환금"이라 한다)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중도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32 조(이익분배금, 중도상환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29 조 및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중도상환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33 조(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49 조의 8 제 5 항에 따라 수익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매연기의 경우(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 237 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 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 1 항을 적용할 때 만기변경을 위한 수익자총회는 제 5 조제 3 항제 3 호에 따른 수익자 동의를 먼저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4 조(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28조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회계기간과 일치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수익증권 보수율에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설정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7

제35조(판매수수료) ①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에 0.8%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취판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원본으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제36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②제 1 항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부동산 및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8.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세무자문, 물리실사, 투자타당성 재무분석, 부동산 시장분석, 자산관리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38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의 수익증권 중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39조제3항 각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39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4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상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 * 제34조에 따른 보수율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다만, 변경시행일로부터 잔여 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

제 40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3.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 41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제 40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40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 42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43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

FORWARD thinking

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4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5 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공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상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공시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 46 조(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핵심상품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47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48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9 조(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FORWARD thinking
FORWARD thinking